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소비자피해 재발방지 위해, 태양열온수기 지원방법 개선

문의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02-2110-5405

■ 산업자원부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 중심으로 발생한 태양열온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의 지원방법을 용자에서 보조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키로 결정함

- 기존의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용자지원(변동금리 3.5%, 2년거치 3년분할 조건, 최대 300만원)제도는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심사기준 강화로 민원이 증가하고,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과대광고 및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A/S 곤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 금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업이 인증제품만 사용하여 설치하고 시공설비에 대한 3년간의 A/S가 보장된 태양열주택*에 대해서만 설치비(약 1,000만원)의 50%를 보조해 줌으로써
 -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품질과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100%용자지원이라는 과대광고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용자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던 민원문제가 해소되고, 부적격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함

※ 태양열주택 : 태양의 열을 이용하여 온수 및 봄·여름·가을까지의 난방 일부를 생산·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된 주택

- 또한, 태양열주택도 겨울철 난방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보일러가 필요하므로, 겨울철 난방까지 책임진다는 일부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지방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관리공단 각 지사와의 협조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예정

※ 태양열온수기의 시장 교란 유형

- 1) 농촌지역 노인층 대상 방문판매시 「정부자금지원 지정업체」 허위광고 및 「에너지관리공단직원」사칭
- 2) 정부에서 설치자금의 대출을 보장한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선카드 결제 후 소비자와 연락 두절
- 3) 소규모 태양열온수기 설치로 난방 및 연료비 100%로 절감가능 하다고 허위 광고

※ 태양열온수기의 소액용자에 따른 소비자 불편사항

- 1) 금융취급기관에서 설치비가 소액(300만원)임에도 연대보증제의 폐지로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용하기가 불편
- 2) 금융취급기관도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대출제도의 취급을 기피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친절을 기대하기가 곤란

1. 태양열온수기 보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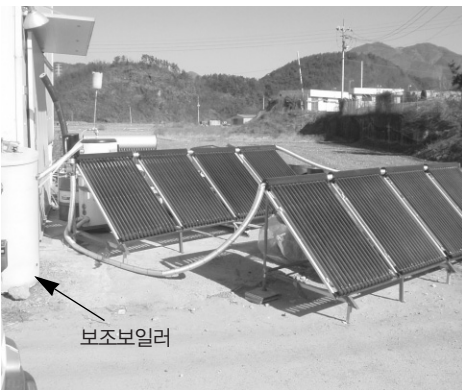
(단위 : 건,백만원)

구분	1983~2002년		2003		2004		2005		2006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태양열온수기	51,756	117,447	45	259	110	385	294	934	7	29	52,212	119,054

2. 종전지원절차 및 개선방안에 따른 지원절차

구분	~2006년	2007년
지원제도	용자 지원	무상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신청액 90%이내지원 (300만원한도)	소요자금의 50%이내 지원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신청	공단 홈페이지에 인터넷신청
시공업체 자격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계획 중
지원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인증설비 • KS표시 허가제품 	계획 중

3.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와 태양열주택 사진 비교

태양열온수기(용자)	태양열주택(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전용(집열판, 진공관사용기능) • 난방 연결은 절대불가 • 온수(집열판 1매~4매 정도 설치시 온수전용만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 난방 사용(보조보일러 필요) • 온수, 난방사용시 (집열판 8매~10매이상 설치해야 온수 및 난방까지 활용 가능(20평기준)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 실태점검(06.12) 결과

겨울철 실내 적정난방온도 준수 백화점, 미용실, 은행 등이 미흡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02-2110-5424

- 겨울철 실내 권장 난방온도(18~20℃)는 백화점·미용실·은행·PC방 등이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백화점, 은행, 편의점 등 서비스업 분야 3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적정난방온도 준수, 영업시간 외 조명소등 등 에너지절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이다.

- 백화점의 경우 10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적정난방온도를 준수한 곳은 단 1개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실내평균온도도 적정난방온도를 2℃ 가량 상회하는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영업시간 외 불필요한 조명을 전부 소등한 곳도 7개에 그치는 등 에너지절약 실천이 타 업종에 비해 취약했다.

- 적정 난방온도의 경우 미용실이 13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2개, 은행이 12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5개만이 준수하는 등,
 - 미용실과 은행도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이 취약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 편의점의 경우 적정난방온도 준수율은 75%로서 타 업종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조명소등 준수율은 50%에 그쳐 조명 에너지절약에 대한 집중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의 실내 평균온도는 20.4℃로서 정부권장 난방온도인 18~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불필요한 조명소등 준수율도 평균 87%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 적정온도 준수율의 경우 편의점·음식점(75%), 극장·자동차영업점(50%) 등이 우수하였고,

- 조명소등 준수율은 미용실·스키장·음식점·유흥음식점·단란주점·목욕장(100%), 주유소(92%), 노래연습장(91%) 등이 우수하였다.
- 이번 조사는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정부와 자율적 협약을 체결한 27개 서비스분야 업종단체(총 711,052개 사업장) 소속 전국 3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서비스업이 포함된 상업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산자부는 금년에도 에너지절약 실천현황을 여름·겨울철 등 총 2~3회 점검하고 우수 업종단체에는 포상을 수여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 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 실천점검(06.12월) 결과

구분	업종	조사 개수	실내온도		불필요한 조명 소등 준수율(%)
			적정난방온도 준수율(%)	평균온도(℃)	
1	백화점	10	10	21.9	70
2	미용실	13	15	21.5	100
3	프랜차이즈	12	25	21.5	100
4	체인스토어	12	33	21.2	75
5	PC방	15	38	20.6	64
6	은행	12	42	20.8	83
7	숙박업소	14	43	20.6	93
8	스키장	4	50	20.5	100
9	극장	8	50	20.6	88
10	자동차영업점	12	50	20.5	92
11	콘도미니엄	11	55	20.2	82
12	중고자동차영업점	12	58	20.0	83
13	수입자동차영업점	12	58	20.6	75
14	편의점	12	75	19.0	50
15	음식점	12	75	20.2	100
16	유원시설	12	82	19.4	92
17	고속도로휴게소	10	90	19.3	78
18	주유소	13	-	-	92
19	유흥음식점	12	-	-	100
20	단란주점	12	-	-	100
21	골프장	11	-	-	100
22	게임방	13	-	-	83
23	엘피가스충전소	11	-	-	78
24	관광호텔	12	-	-	90
25	목욕장	12	-	-	100
26	사우나볼가마	12	-	-	70
27	노래연습장	12	-	-	91
28	공공기관, 기타	8	100	19.4	100
	계	321	53	20.4	87



교체희망시 공사비의 50%까지 지원 계획

전기요금조정 및 복지할인 제도 확대 내용 안내

문의 | 한국전력공사 02-3456-3114

대가족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

- 적용대상 : 가구원수 5인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
 - ※ 적용대상 여부 판단 기준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으로 판단

■ 요금적용방법

- 내용 : 300kWh초과 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요금 적용

구분	100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0초과
일반가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
대가족	일반가구와 같음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 사용량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단계 낮은 요금 적용

- 1주택수가구 및 감액요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시 적용순서 : 1주택수가구→대가족요금→감액요금

■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
- 신청방법 : ① 내 방
 - ② 전 화 : 전화 접수 후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 ③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의 검침자료 송부시 일괄 신청 가능

복지할인 요금제도 확대 시행

구분	적용대상	현재	확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0%	2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수급자	15%	20%

■ 복지할일 요금 제도

구분	적용대상	할인율	비고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04.03.01 시행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04.03.01 시행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04.03.01 시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0%	'05.12.28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수급자		'05.12.28 시행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07.01.15 시행

- 복지할일제도는 주택용 주 d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
- 신청방법 :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복지카드(장애인), 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시설) 중 해당 증빙서류 1부
-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서류제출 불요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확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특구 내에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도·소매시설 및 판매시설 제외)
-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2010까지 특례적용)

전기요금 조정

- 종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산업용(을·병), 가로등, 심야전력을 중심으로 인상
-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부담증가는 없도록 추진
 -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사용, 교육용, 중소기업(산업용 '갑')요금 동결
 - 원가보상률이 높은 주택용, 일반용요금 동결

〈종별 조정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산업용			가로등	심야전력	종합
				갑	을·병	평균			
동결	동결	동결	동결	4.9%	4.2%	동결	4.2%	9.7%	2.1%

* 해당 계약종별 클릭시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를 위한 요금체계 도입·개선

-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사용분 할증요금제(07.4월분요금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종합계약 APT
 - 요금적용방법
 -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100kWh 초과하는 종합계약아파트에 대한 사용량요금 할증 (기본요금은 할증하지 않음)
 - 세대당 공동분사용량 100kWh 초과~300kWh이하 : 사용량요금의 2배
 - 세대당 공동분사용량 300kWh 초과~500kWh이하 : 사용량요금의 3배
 - 세대당 공동분사용량 500kWh 초과 : 사용량요금의 2배
 - 직전 1년 이내 할증요금 대상 첫째 월에는 할증요금 적용을 예고하고 둘째 월부터 할증요금 부과

■ 계절별 ·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07. 4. 1일부터 시행)

○ 적용대상

- 계절별 구분기준 변경 :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임시전력 고객
- 계절별 ·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 산업용(을), 일반용(을), 산업용(병) 고객

○ 주요내용

- 계절구분 개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행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개선안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시간대별 구분 개선

구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00~08시						
08~09시						
0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 : 최대부하 ■ : 중간부하 □ : 경부하

- 심야전력 심야시간대 변경(22:00~08:00 → 23:00~09:00)

- 역률 계산시간 변동

- 산업용(을), 일반용(을), 산업용(병) : 주간(최대부하), 저녁(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함은 동일하나 세부 시간대가 변동
- 무효전력량계를 부설한 기타 종별 : 역률 계량 시간대 변경(08:00~22:00 → 09:00~23:00)